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32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전재수·이기헌·박홍배

정준호 · 박해철 · 조 국

김정호 · 김재원 · 민형배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서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루어졌으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26일 종료되었고, 위원회는 2025년 1월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때 군사 정권에 맞선 부산시민은 5만 명에 이르지만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은 300여 명에 그치고 있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45년간 사회적 기반 부족으로 현재 진상규명만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사회 각층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한편,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필요성 및 생활지원금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주장 또한 제기되었음.

이에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충실히 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 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등을"을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로, "있다"를 "있으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2(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부마민주항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재단으로 이관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고, 반입된 기록물을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재단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 간)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スト) ① -----(법률 제18845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을 말 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 -----3년-----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정부는 부마민주 지원 등) ① ----------<u>,</u> 진상규명을 위한 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 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사 · 연구, 관련자 및 유족의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u>있으며</u> 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u>30일</u> 이상 구금된 자
- 2. (생략)
- 3. 재직기간 <u>1년</u> 이상인 해직자

② · ③ (생 략) <신 설>

제22조(생활지원금) ①
<u>.</u>
11일-
2. (현행과 같음)
3 <u>6개월</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부마민주항쟁 관련 기
록물에 대한 조치)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부마민주
항쟁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여
<u>야 한다.</u>
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
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
의를 얻어 부마민주항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재단으
로 이관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
거나 보관하고 있는 부마민주
항쟁 관련 기록물을 국내로 반

입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 부와 성실히 교섭하고, 반입된 기록물을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재단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